

통상 News Brief 2023_Vol.1

February 20, 2023

법무법인(유) 세종 국제통상법센터의 통상 News Brief는 매월 수집되는 국제통상 관련 뉴스를 고객들에게 제공하며, 그 중 가장 주목할 만한 이슈를 Top Story로 게재합니다. 이번 호에 게재된 통상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목차

* 제목을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Top Story] p.2

US-Steel and aluminum products 사건에 대한 WTO 패널판정의
주요 내용과 의미

[1월-2월 주요 단신]

- (12.29./01.25.) 미 재무부, IRA 세액공제 가이드스 발표 p.5
- (01.05.) G7 의장국, 2023 G7 우선순위 발표 p.6
- (01.10.) 2023 북미정상회의(North American Leader's Summit) 개최 p.6
- (01.11.) 미국-인도 제13차 통상정책 포럼(Trade Policy Forum) 개최 p.7
- (01.12.) EU 역외보조금 규정 발효, 7월부터 본격 이행 p.7
- (01.17./02.01.) EU Green Deal Industrial Plan 발표 p.8
- (02.01.) 인도네시아, 2023년 보크사이트 및 구리 수출 금지 예고 p.9
- (02.01.) EU-싱가포르 새로운 디지털 파트너십 런칭 p.9
- (02.05.) G7+Price Cap Coalition 러시아산 정제 유류품에 대한 가격상한제 추가도입 p.9
- (02.06.) EU-인도 통상기술위원회(Trade and Technology Council) 출범 p.10

[Top Story]

US-Steel and aluminum products 사건에 대한 WTO 패널판정의 주요 내용과 의미

1. 개요

2018년 3월 미국은 1962년 무역확장법(Trade Expansion Act of 1962) 제232조를 근거로 특정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각각 25%,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였습니다.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한국을 비롯한 캐나다, 멕시코, 호주, 아르헨티나, 브라질 및 EU는 이러한 추가관세에 대한 면제조치를 받았습니다. 2018년 5월, 미국은 한국산에 적용되던 추가관세 면제 대신 쿼터제를 도입하였고, 2018년 6월에는 캐나다, 멕시코, EU에서 수입되는 철강제품과 브라질, 캐나다, 멕시코, EU에서 수입되는 알루미늄 제품에 적용되던 추가관세 면제가 쿼터제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러한 변경이 있는 후에도 대통령령을 활용하여 특정 국가에서 조달되는 일부 제품에 대해 예외적으로 추가관세를 면제하는 일련의 조치들이 취해졌습니다.

중국, 인도, EU, 캐나다, 멕시코, 노르웨이, 러시아, 스위스, 튀르키예를 포함한 9개의 WTO 회원국들은 문제가 된 미국의 조치를 WTO 분쟁해결기구에 제소하였습니다. 이 중 캐나다와 멕시코는 2019년 5월 미국과 상호 만족스러운 해결점을 도출하여 분쟁해결절차가 종료되었습니다. 뒤이어 EU도 2022년 1월 분쟁해결절차를 공식적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반면, 중국, 노르웨이, 스위스, 튀르키예의 경우 2022년 12월 각 국가마다 별개의 패널보고서가 회람된 상황입니다.¹

특히 이번 US-Steel and aluminum products 사례는 동일한 무역관련 조치에 대해 단일 패널판정부가 구성되어 하나의 패널보고서가 회람되던 관행에서 벗어나, 각 국가마다 별개의 패널보고서가 회람되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는 피제소국인 미국의 주장이 반영된 것으로, 미국은 제소국들이 각각 문제가 되는 조치를 다르게 식별하고, 이에 따라 상이한 주장을 전개하고 있으므로 DSU 제9.1조가 적용되지 않으며, DSU 제9.3조에 따라 패널리스트 구성과 패널 진행시간표가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을 전개하였습니다.² 이에 따라 분쟁해결기구는 동일한 3인으로 패널판정부를 구성하여 각 국가마다 별개의 패널보고서를 작성하여 2022년 12월 9일 회람하였습니다.

¹ 이외 인도와 러시아의 경우, 2019년 1월 패널판정부가 구성된 이후 별다른 진행상황이 없는 상태임.

² DSU 제9.1조는 동일 사안에 대해 2개 이상의 회원국이 제소한 경우, 가능한 단일 패널판정부를 설치하여 검토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제9.3조에서는 동일한 사안과 관련하여 2개 이상의 패널판정부가 구성되는 경우, 가능한 동일한 패널위원이 선임되며, 절차와 관련하여 조화로운 시간표를 활용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

2. 주요 쟁점사항

1) GATT 제21(b)(iii)조³

피제소국인 미국은 문제가 된 조치는 국가안보 예외 조항인 GATT 제21(b)조에 의해 정당화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나아가 동 조항은 그 문구와 문법구조, 맥락 및 협정의 목적을 고려하였을 때, 자기판단적(self-judging)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패널판정부의 검토는 제21(b)조의 적용을 인정하는 선에서 멈춰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패널판정부는 DSU 제3.2조⁴ 및 국제관습법으로 인정된 해석원칙을 바탕으로, 패널판정부에게는 미국의 GATT 제21(b)조의 적용이 정당한지를 판단할 권한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⁵ 특히 패널판정부는 미국이 GATT 제21(b)(iii)조를 근거로 자국의 조치를 정당화하고 있으나, 미국 상무부와 무역확장법 제232조를 근거로 작성된 철강 및 알루미늄 보고서(Steel and Aluminum Report)의 분석과 결론에서는 제21(b)(iii)조에서 의미하는 “국제관계에 있어 비상상황(emergency in international relations)”의 존재를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2) GATT 제21조 재판관할권 문제

이번 사례는 WTO 분쟁해결기구(Dispute Settlement Body)가 국가안보 이슈를 다루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문제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패널보고서가 회람된 후인 2023년 1월 27일에 진행된 WTO 분쟁해결기구 회의에서 중국은 미국을 일방적인 강패(unilateral bully), 규범파괴자(rule breaker), 공급망 교란자(supply chain disruptor)로 지칭하며 미국의 행위를 비난하였습니다.

반면, 미국은 지난 70년 동안 일관되게 국가안보 이슈는 WTO 분쟁해결기구의 판단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었으며, 세계무역기구(WTO)를 비롯하여 어떠한 WTO 회원국도 다른 회원국이 취하는 다양한 안보위협에 대응하는 조치의 적부를 판단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미국은 WTO에서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항을 다루는 것은 통상기구라는 WTO의 본래의 목적과도 양립할 수 없으며, 만약 그러한 사항까지 다루게 되면 WTO 회원국들이 WTO를 통상문제에 관한 논의와 협상의 장으로 활용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나아가 미국은 패널리포트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항을 사전에 예측하여 대비해야 하는 주권국가의 현실을 무시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본질적인 흠결이 있는 위험한 보고서는 채택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패널보고서에 대해 상소를 제기하였습니다.

³ Article XXI: Security Exceptions
Nothing in this Agreement shall be construed

...

- (b) to prevent any contracting party from taking any action which it considers necessary for the protection of its essential security interests
 - (i) relating to fissionable materials or the materials from which they are derived;
 - (ii) relating to the traffic in arms, ammunition and implements of war and to such traffic in other goods and materials as is carried on directly or indirectly for the purpose of supplying a military establishment;
 - (iii) taken in time of war or other emergency in international relations; or

⁴ DSU 제3.2조는 분쟁해결제도가 다자간통상체제를 안정(security)과 예측가능성(predictability)을 확보하는 핵심적 요소임을 강조하면서, 분쟁해결제도는 국제공법의 해석에 관한 관례적인 규칙에 따라 WTO 협정의 규정들을 명확히 하는데 기여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음. 다만, 분쟁해결기구의 권고와 판정은 대상협정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증가시키거나 축소시킬 수 없음.

⁵ DS 544, para. 7.108

미국은 WTO회원국들이 국가안보 이슈에 대한 공통의 이해를 심화해 나가야 하며, WTO 분쟁해결시스템 개혁 논의에 있어서도 해당 이슈를 지속적으로 제기할 것을 예고하였습니다. 또한 궁극적으로 WTO 회원국들은 WTO협정 제9조⁶에 따라 GATT 제21조에 대한 권위있는 해석(authoritative interpretation)을 도출해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상기 WTO 분쟁해결기구 회의에서 EU는 상소(appeal)는 WTO회원국의 권리이나 현재는 상소위원의 결원으로 이러한 권리행사가 차단되어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소국과 피제소국의 권리를 모두 보호하기 위한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EU는 중국 제소건에 대한 패널보고서는 미국의 안보 이익에 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단순히 국가안보 예외조항은 완전히 자기판단적 사항이 아니며, 분쟁당사국간 전쟁이나 기타 국제관계에 있어 비상상황은 없었다는 점만을 언급하고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EU는 국가안보 예외조항이 처음으로 다루어졌던 우크라이나의 러시아를 상대로 한 제소건(DS 512)에서도 국가안보 예외조항의 특별한 성격과 회원국이 이러한 예외조항을 적용함에 있어 어느 정도의 재량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으나, 남용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재량이 무제한적으로 인정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미국과는 다소 다른 입장을 피력하였습니다.

⁶ WTO협정 제9조는 WTO의 의사결정방식을 명시하고 있는 조항으로 동조 2항에서는 각료회의와 일반이사회가 WTO협정을 포함하여 GATT가 포함된 Annex I에 있는 협정의 해석과 이를 채택할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 채택은 WTO 회원국 4분의 3의 찬성으로 이루어짐.

[주요 단신]

(12.29.) 미 재무부, IRA 세액공제 가이드스 발표

12월 29일, 미국 재무부는 IRA에 포함된 전기차 세액공제 요건 중의 하나인 핵심광물·배터리부품 가이드스 제정방향을 예고함.⁷ 최종 가이드스는 2023년 3월에 발표될 예정임.

- 배터리에 활용되는 핵심광물이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1) 핵심광물의 추출 및 가공이 미국 또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이루어지거나, (2) 핵심광물의 재활용이 북미지역에서 이루어져야 함. 2022년 12월 기준,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는 한국을 포함하여 20개국이며, 미국 재무부와 연방국세청은 자유무역협정 체결국이 아니더라도 핵심광물 요건이 적용되는 국가를 추가할 수 있음.
- 나아가 핵심광물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2023년부터 2024년까지 한시적으로 3단계의 이행과정 (compliance process)을 도입할 예정임; 첫번째 단계에서는 추출, 가공 또는 재활용이 공통된 장소(in common set of locations)에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함. 두번째 단계에서는 조달된 핵심광물이 (1) 미국 또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다른 국가에서 추출 또는 가공되었는지, 또는 (2) 북미에서 재활용되었는지를 판단함. (1)에서 FTA 체결국에서 추출 또는 가공된 경우 FTA 체결국에서 50% 이상의 부가가치가 창출되어야 하며, (2) 재활용의 경우에도 북미지역-미국, 캐나다, 멕시코 영토-에서 50% 이상이 재활용되어야 함. 세번째 단계에서는 배터리에 포함된 핵심광물 비율을 계산하게 됨.
- 배터리부품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4단계를 거치게 됨. 첫번째 단계에서는 부품의 조립 또는 생산된 장소를 결정하고, 두번째 단계에서는 친환경 배터리에 포함된 각각의 부품에 대한 증분가격(incremental value)을 결정하게 됨. 세번째 단계에서는 모든 부품의 증분가격을 더하여 전체 배터리부품 가치를 결정하게 됨. 네번째 단계에서는 2단계와 3단계에서 도출된 값을 바탕으로 북미지역에서 제조 또는 조립된 배터리부품의 비율을 계산하게 됨.
- 이러한 내용 외에도 별도의 FAQ를 발표하여 적격 상업용 친환경차(qualified commercial vehicle) 등 불명확하다고 지적된 규정들을 명확히 하고 있음.
- 이러한 발표에 대해 IRA 제정을 주도한 Manchin 상원의원은 재무부의 가이드스는 본래의 제정 의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1월 25일 전기차 세액공제를 규정한 IRA 제30D조의 시행을 늦추는 법안을 발의하였음.⁸

⁷ <https://home.treasury.gov/news/press-releases/jy1179>, <https://home.treasury.gov/system/files/136/30DWhite-Paper.pdf>

⁸ <https://www.manchin.senate.gov/newsroom/press-releases/manchin-legislation-halts-ev-tax-credits-until-treasury-issues-guidance-in-line-with-ira>

(01.05.) G7 의장국, 2023 G7 우선순위 발표

1월 5일 일본 경제산업상은 2023년 G7 의장국으로써 일본이 생각하는 2023년도 G7의 우선순위와 미래 경제질서에 대해 발표하였음.⁹

- 일본 경제산업상인 니시무라 야스토시(Nishimura Yasutoshi)는 새로운 질서를 만들기 위해 다음 3가지를 구축할 것을 강조하고 있음; △ 경제안보(Building up economic security), △ 입장을 같이하는 국가간 협력(Building up cooperation among like-minded countries): △ 억지능력(Building up our deterrence capabilities).
- 특히 첫번째 경제안보 구축과 관련하여 첫째, 반도체, 바이오기술 등 중요 유망첨단기술(emerging technologies)에 대한 보호와 촉진을 언급하며, 관련분야간 민간기업간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음. 나아가 수출통제에 있어서도 협력을 강화할 것을 언급하고 있음. 둘째, 공급망 회복력을 구축할 것을 언급하고 있음. 보다 구체적으로 광물자원에 대한 공급을 다변화하고 폐전자기기의 활용을 극대화하는 도시 광산(urban mining)을 적극 활용할 것을 주문하고 있음. 나아가 탄소배출 제로 공동체(Asia Zero Emission Community) 설립, 에너지 안보대화(Energy Security Dialogue) 채널 활용 등을 언급하고 있음. 마지막으로 경제적 강제(economic coercion)에 대응할 것을 주문하고 있음. 이를 위해 문제지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시 대항조치를 마련할 것을 언급하고 있음.
- 이어 입장을 같이하는 국가간 협력을 위해 강제노동, 보조금 이슈를 함께 고민할 뿐만 아니라, CPTPP 및 IPEF와 같은 프레임워크를 활용해 나갈 것을 강조하고 있음.

(01.10.) 2023 북미정상회의(North American Leader's Summit) 개최

1월 10일 미국-캐나다-멕시코 정상들이 모여 북미지역의 공통의 비전을 제시하는 제10차 북미정상회담(North American Leaders' summit)을 개최함¹⁰

- 3국은 6개 필라를 구분하여 협력을 강화하기로 함; △ 다양성, 평등 및 포용, △ 기후변화 및 환경, △ 경쟁력, △ 이민 및 개발, △ 건강, △ 지역 안보
- 특히 세번째 경쟁력 필라에서 북미지역 내 공급망 강화와 미래 핵심 산업인 반도체 및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을 강조하고 있음. 이를 위한 민관 대화와 북미지역 공통의 도전과제와 기회를 파악하기 위한 공급망 맵핑을 강조하고 있음.
- 이를 위해 2023년초에 반도체 포럼(semiconductor forum)을 조직하고 반도체 공급망 맵핑을 조율해 나갈 것을 약속하고 있음. 나아가 북미지역에 위치한 핵심 광물자원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와 보유량을 수집하는 맵핑도 공동 추진하기로 약속함.

⁹ <https://www.csis.org/events/japans-2023-g7-priorities-and-future-economic-order>

¹⁰ <https://pm.gc.ca/en/news/backgrounders/2023/01/10/fact-sheet-key-deliverables-2023-north-american-leaders-summit>,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2023/01/10/fact-sheet-key-deliverables-for-the-2023-north-american-leaders-summit/>

(01.11.) 미국-인도 제13차 통상정책 포럼(Trade Policy Forum) 개최

1월 11일 미국과 인도의 통상/상공부 장관들은 제13차 통상정책 포럼(Trade Policy Forum)을 개최함¹¹

- 양국 장관들은 통상정책 포럼이 미국과 인도 양국 관계의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새로 회복력 있는 통상에 관한 이슈를 다루는 작업반(Working Group on Resilient Trade)을 설립할 것을 약속하고 있음. 동 작업반은 분기별로 소집될 예정임.
- 동 작업반에서는 △ 양국간 무역관계를 심화시켜 지속가능한 공급망을 구축하고, △노동자의 이익과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의 중요성을 다루며, △ 모범규제 관행 및 △ 향후 상호 관심분야의 협력추구시 적용될 관련 규범과 규정 수립에 관한 절차도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함. 더불어 환경보호와 공통의 지속가능관련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통상의 역할에 대해 논의해 나가기로 함.
- 차기 회의인 제14차 미국-인도 통상정책 포럼은 2023년 하반기 이전에 개최될 예정임.
- 특히 인도 Goyal 상공부 장관은 언론을 통해 WTO에서 진행 중인 미국과 인도간의 몇몇 분쟁에 대해 2~3개월 내에 해결책을 찾을 것이라고 언급함. 이는 통상정책 포럼 후 발표된 공동선언문을 통해서도 확인되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분쟁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음. 하지만 미국의 특정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관한 무역확장법 제232 조 조치와 관련된 분쟁일 가능성이 높음.

(01.12.) EU 역외보조금 규정 발효, 7월부터 본격 이행

1월 12일, EU 역내시장 왜곡에 대응하는 새로운 규정인 EU 역외보조금 규정(Foreign Subsidies Regulation)이 발효됨.¹²

- 해당 규정은 2021년 5월 EU 집행위에서 제안된 후 2022년 6월 EU 의회-이사회의 합의를 거쳐 본격 발효됨.
- 역외보조금 규정은 기업결합, 공공조달 등과 같이 EU 역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경제활동에 적용되며 비EU 국가로부터 재정적 기여를 받은 경우, EU 차원의 조사가 진행될 수 있음을 골자로 하고 있음.
- 특히 5억유로 규모 이상의 M&A가 이루어지고, EU 회원국이 아닌 국가로부터 오천만 유로 이상의 재정적 기여를 받은 경우 또는 2억 5천만 유로를 넘는 공공조달에 있어서 400백만 달러 이상의 재정적 기여를 받은 경우 이를 EU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EU 집행위 차원의 조사를 통해 역외 보조금이 존재하고 해당 보조금으로 인해 EU 내 왜곡이 발생한 경우, 긍정적

¹¹ <https://pib.gov.in/PressReleaseIframePage.aspx?PRID=1890606>, <https://ustr.gov/about-us/policy-offices/press-office/press-releases/2023/january/readout-ambassador-tais-meeting-indian-minister-commerce-and-industry-piyush-goyal>

¹² https://competition-policy.ec.europa.eu/international/foreign-subsidies_en,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3_129, 규정원문은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2022R2560&qid=1673254237527> 참조.

효과와 부정적 효과 간의 비교형량을 거쳐 부정적 효과를 상쇄할 수 있는 대응 조치를 취하게 됨.

- 동 규정은 6개월간의 이행준비기간을 거쳐 2023년 7월 12일부터 시행되며, M&A 및 정부조달과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통보의 경우 2023년 7월 12일 이후 시작되는 건부터 적용될 예정임.

(01.17./02.01.) EU 그린딜산업계획(Green Deal Industrial Plan) 발표

1월 17일 1월 17일 EU 집행위원장 von der Leyen은 다보스 포럼에서 유럽을 친환경 기술과 기후 중립의 중심으로 만들기 위한 그린딜산업계획(Green Deal Industrial Plan)을 발표함.¹³

- 동 계획은 4개의 필러-규제환경, 재정, 기술, 통상-로 구성되어 있음. 첫번째 필러는 규제환경으로, EU는 탄소제로에 보다 빠르고 수월하게 도달하기 위해 Net-Zero Industry Act를 제정하여 2030년까지 유럽의 친환경 기술이 달성해야 하는 분명한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체 공급망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것임. 나아가 신규 친환경기술 생산부지(new clean-tech production sites)의 신속한 개발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단순화해 나갈 것임. 아울러 Net-Zero Industry Act는 진행 중인 핵심원자재법(Critical Raw Material Act)과 보조를 맞추어 나갈 것을 예고하고 있음. EU 역내 원자재의 제련, 가공 및 재활용 능력을 향상시키고 무역상대국들과 협력하여 현재 특정 국가에 집중화 되어있는 조달, 생산, 가공 문제에 대응해 나갈 것임.
- EU의 핵심원자재법(Critical Raw Material Act)은 3월 말에 그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고, Net-Zero Industry Act는 3월 EU 정상회의에서 논의 후, 구체화될 예정임. Net-Zero Industry Act와 관련하여 친환경기술의 의미가 모호하며,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방안이나 산업의 탈탄소 정책은 빠져 있다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 둘째, 친환경 기술개발을 위한 투자와 자금조달을 강화할 것임. 이를 위해 친환경 기술 생산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확대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국가보조금규정(state aid rules)을 유연하게 만들고, 전략적으로 중요한 친환경기술 생산시설에 대해 타겟팅된 지원을 해나갈 계획임. 중기적으로는 유럽국부펀드(European Sovereignty Fund)를 조성할 계획임.
- 셋째, 친환경 전환을 위한 기술개발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해당 분야의 숙련된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규정과 재원을 총동원할 것임.
- 넷째, 개방되고 공정한 통상을 원활히 할 것임. 튼튼하고 회복력있는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더 많은 국가들과 통상협정을 체결하는 동시에, 공정한 통상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중국과는 새로운 역외보조금 규정 등을 적극 활용하여 리스크 경감(de-risking)에 집중할 것임.

¹³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speech_23_232,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3_510

(02.01.) 인도네시아, 2023년 보크사이트 및 구리 수출 금지 예고

인도네시아 대통령인 Joko Widodo는 2023년 6월부터는 모든 보크사이트의 수출을, 6월 이후에는 가공되지 않은 구리수출 금지를 예고함¹⁴

- Joko Widodo는 인도네시아 국내에 보크사이트 및 구리의 가공 산업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보크사이트 및 구리의 수출을 금지시키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을 발표함. 향후 주석도 수출통제 대상으로 포함시킬지를 검토할 예정임.
- 2022년 인도네시아는 니켈 수출을 금지한 바 있으며, EU는 이를 WTO 분쟁해결기구에 제소하였고, 인도네시아는 해당 분쟁에서 패소함.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자국의 천연자원 관리방식에 다른 국가가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음.

(02.01.) EU-싱가포르 새로운 디지털 파트너십 런칭

(02.01.) EU와 싱가포르는 새로운 디지털 파트너십을 런칭함.

- 디지털 파트너십은 연간 고위급 회의인 Digital Partnership Council를 설치하여 양국간 디지털 관련 현안을 논의하는 장임.
- EU는 일본, 한국에 이어 아시아 지역에서 싱가포르와 디지털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양자간 디지털 기술 분야에 있어 협력을 도모하고 있음. EU와 싱가포르는 2023년의 주요 우선과제로 e-identification과 AI 거버넌스에 대한 공통의 접근법 개발,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및 디지털 통상의 원활화를 선정함.
- 특히 디지털 파트너십을 시작하면서 양 당사국은 디지털 통상원칙(Digital Trade Principles)에 서명함. 해당 원칙은 EU와 싱가포르가 정당하지 않은 무역장벽을 없애고, 개방되고, 공정하며 경쟁적인 디지털 경제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보여주는 것임.

(02.05.) G7+Price Cap Coalition 러시아산 정제 유류품에 대한 가격상한제 추가도입

2월 5일, G7+ Price Cap Coalition은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가격상한제를 도입함¹⁵

- G7+Price Cap Coalition은 호주, 캐나다, EU, 일본, 영국 및 미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가격

¹⁴ <https://jakartaglobe.id/business/indonesia-mulls-halting-copper-ore-exports>,
<https://en.tempo.co/read/1678781/indonesia-to-expand-raw-mineral-export-ban-despite-wto-dispute>

¹⁵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3_602

상한제를 2022년 12월 도입하여 2023년 2월 5일부터 상한제 대상 품목을 추가함.

- 구체적으로 러시아산 고부가가치 제품(premium-to-crude products)은 배럴당 100달러, 중·저부가가치 제품(discount-to-crude)은 배럴당 45달러의 가격 상한제가 도입됨.
- 가격 상한선을 지키지 않고 러시아산 석유 제품 등을 제3국으로 해상 운송하는 해운사들은 G7, 호주, EU의 해상 보험 및 금융 서비스 이용이 전면 금지됨.

(02.06.) EU-인도 통상기술위원회(Trade and Technology Council)출범

2월 6일 EU와 인도는 양국간 새로운 통상기술위원회(Trade and Technology Council, TTC) 설립을 발표함¹⁶

- TTC는 통상과 신뢰할 수 있는 기술 및 안보와 같은 공통의 전략적 중요성을 가진 부문에 있어 연구 및 혁신협력을 이끌어내는 장으로 일년에 한 번씩 양국간 장관급 회의가 진행되며, EU와 인도는 3개의 작업반을 구성하여 운영하기로 함.
- 3개의 작업반은 △ 전략적 기술, 디지털 거버넌스 및 디지털 연결(Strategic technologies, digital governance and digital connectivity) 작업반, △ 친환경 에너지 기술(Green & clean energy technologies) 작업반, △ 통상, 투자 및 회복력있는 공급망(Trade, investment and resilient value chains) 작업반으로 구성됨. 특히 세번째 작업반에서는 핵심 부품, 에너지 및 원자재의 접근과 회복력있는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한 작업과 이와 관련된 국제 표준 분야에 있어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로 함.
- 첫번째 TTC 장관급 회의는 2023년 봄에 개최될 예정이며, 이와는 별도로 EU와 인도간 FTA 협상도 진행 중임. FTA 제3차 협상에서는 데이터 이동, 개인정보, 소비자 보호, 디지털 통상관련 이슈들이 다루어졌으며, 제4차 협상은 2023년 3월에 예정되어 있음.

¹⁶ [EU-India: Joint press release on launching the TTC \(europa.eu\)](#), [EU-India: new Trade and Technology Council \(europa.eu\)](#)

For Questions or Comments

- 김두식 | 고문, 변호사 T. 02-316-4223 E. dskim@shinkim.com
- 윤영원 | 변호사 T. 02-316-1628 E. ywyoona@shinkim.com
- 박효민 | 변호사 T. 02-316-4252 E. hmipark@shinkim.com
- 박경진 | 전문위원 T. 02-316-4706 E. kjpark@shinkim.com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 LLC'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

서울시 종로구 종로3길 17 디타워 D2 23층 (우)03155 T. 02-316-4114 <https://www.shinkim.com>
